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0. 16 선고 2023가단527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윤

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김솔이, 김유현

변론 종결2024. 8. 28.

판결 선고2024. 10. 16.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22. 6.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별지 채권 목록 기재 채권 중 18,690,775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상호에서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의 보증부탁을 받아 아래와 같이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B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아래 돈을 대출받았다.

2019.11.01.	C은행	D	2020.10.30.	225,000,000원(250,000,000원)
-------------	-----	---	-------------	----------------------------

이후 보증조건변경을 통하여, 보증기한이 2022. 10. 28.로 변경되었다.

나. C은행은 2022. 8. 30. 원고에게 B의 이자연체를 사유로 한 보증사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22. 12. 16. C은행에게 229,083,287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2022. 12. 23. 10,715,238원을 회수하였고, 그 외 추가보증료 414,240원과 법절차비용 7,423,887원이 발생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변제가 이루어져 변론종결에 가까운 2024. 7. 10. 기준 구상금채권액은 77,273,671원이다.

다. B는 아래와 같이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별지 기재 각 부동산	피고	2022.6.28.	2022.6.30.	14381	대전지법원 보령등기소	1,500,000,000원
-------------	----	------------	------------	-------	-------------	----------------

라.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2024. 6. 12. 피고에게 1,500,000,000원,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166,417,104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24. 6.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가단34446호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배당이의 금액은 58,582,896원(가압류 청구금액

225,000,000원 - 배당액 166,417,1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21, 2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비록 장래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B는 원고와 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미 피보전권리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한편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가 C은행의 일반자금(시설)대출 3,862,000,000원에 관하여 2022. 8. 2.부터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직전인 2022. 6. 2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부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원고는 B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B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한편 원고는 무자력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해당여부와 무효 여부는 평면을 달리하는 문제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B의 적극재산은

11,404,511,372원, 소극재산은 9,935,794,049원인바, B의 채무초과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1)

이 사건 부동산	8,203,011,100	인정(다툼 없음)2) 원고의 8. 27.자 준비서면 및 피고의 8. 23.자 준비서면을 기준으로 한다.
제주 서귀포시 공동주택	215,000,000	인정(다툼 없음)
장기금융상품	54,740,000	33,188,783원 인정(①)
F공제조합출자금	72,546,280	다툼 없음
임대차보증금	270,000,000	인정(②)
116,995,000	인정(다툼 없음)	
보통예금	164,444,461	인정(다툼 없음)
재고자산	648,473,073	인정(을4, 14, ③)
무형자산	331,397,807	인정(을4, 8, ④)
14,339,360		
41,525,667		
기타 유형자산	1,261,524,841	인정(을15, ⑤)
기타 보증금 일부	32,065,000	인정(다툼 없음)
G 특허보증금	1,100,000,000	불인정 (갑14, 27, 9, ⑥)
합계(원)	11,404,511,372	

①: 피고는 납입금액 54,740,000원이 적극재산이라는 취지이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적극재산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별다른 근거 제시 없이 전문(傳聞)을 근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툼고 있다.

③: 원고는 위 금액이 단순히 분식회계된 장부가액에 불과할 뿐이며, 나아가 갑 제16호증(공소장)에 나와 있듯이 B의 가치 있는 자산은 B 및 피고 회사의 대표자들이 공모하여 매각을 하였기에 재고자산이 존재한다는 것도 신빙할 수 없다고 다툼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어떠한 증명도 이루어진 바 없고, 갑 제16호증은 공소장에 불과할 뿐 아니라, PVC 압출 기계 1대를 횡령하였다는 것을 불과하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④: 원고는, 단순히 장부가액으로서 감가상각한 특허권이 331,397,807원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 개발비와 소프트웨어의 장부가액은 공동담보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적극재산으로

인정될 수는 없으며, B는 피고 회사와 공모하여 분식회계를 하고 있었으므로, 더욱더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분식회계 주장을 받아들일 증거가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나머지 주장은 단순 의문 제기에 불과하다.

⑤: 원고는 기계장치는 갑 제16호증(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2억 9,700만원 상당으로 보이고, B 및 피고 회사 각 대표이사가 공모하여 B의 자산을 빼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차량운반구, 공구, 금형 등이 사해행위 당시에 존재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또한, 분식회계된 장부가액을 그대로 적극재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공소장 기재 처분행위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분식회계 주장을 받아들일 증거가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⑥: 갑 제14,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B가 G에 대하여 11억 원의 특허보증금 반환채권이라는 적극자산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적극자산 산정에서 제외한다.

기업은행	960,000,000	인정(다툼 없음)
C은행	4,531,000,000	인정(다툼 없음)
전환사채금	3,000,000,000	인정(다툼 없음)
G(대여금)	300,000,000	인정(다툼 없음)
H(물품대금)	36,520,000	인정(다툼 없음)
(주)I(물품대금)	27,582,270	인정(다툼 없음)
J(공사대금)	60,000,000	인정(다툼 없음)
G 특허보증금	900,000,000	인정(다툼 없음)
F공제조합 보증채무	769,983,798	불인정(을 18)
K	120,691,779	인정(갑28)
합계(원)	9,935,794,049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한철

별지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B의 적극재산이 15억 원 줄어들어 B는 31,282,677원의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된다. 설령 사해행위를 그 행위로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하는 최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규모(사해행위)와 그 결과 초래되는 채무초과상태의 규모(31,282,677원)에 비추어 보면 B에 해의를 인정하기도 쉽지 않다.

2) 원고의 8. 27.자 준비서면 및 피고의 8. 23.자 준비서면을 기준으로 한다.